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제〉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8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6.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생략)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u>

나.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육 자료에 해당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 현장에서 단순한 수업 보조도구를 넘어, 수업의 내용·방법 및 학생의 학습활동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¹⁾

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데이터 및 행동 데이터 등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증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문제와 학교별 선택에 따른 품질 편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²⁾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을 확보하고 학부모·교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 자료 선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1) 현행법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며, AI 팽독, 똑똑! 수학탐험대, 구글 클래스룸, 캔바 등이 이에 해당함.

2) 2026년 7월 17일 기준 전체 12,213개 학교 중 12,070개(98.8%)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참조

□ 그런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확대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개별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특히 AI·디지털 기반 교육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안건 증가에 따른 회의 준비 및 자료 작성 등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기 중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한 경우 심의 일정에 따라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교육감 차원에서 적합성이 확인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의 반복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교육 자료 선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3) ‘AI 펍톡’이나 ‘똥똥! 수학탐험대’와 같이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에 활용되고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와 교육감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하위 법령에서 교육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보는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16개 교육감별로 동일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인정하기 위한 행정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교육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교, '26.7.17. 기준)

연번	지역	전체 학교 수	심의 완료 학교 수		향후 심의 예정 학교 수	
1	서울	1,363	1,343	98.5%	20	1.5%
2	전남광주	1,158	1,158	100.0%	-	-
3	부산	641	628	98.0%	13	2.0%
4	대구	468	464	99.1%	4	0.9%
5	인천	569	569	100.0%	0	0.0%
6	대전	311	307	98.7%	4	1.3%
7	울산	252	250	99.2%	2	0.8%
8	세종	109	109	100.0%	-	-
9	경기	2,621	2,603	99.3%	18	0.7%
10	강원	636	631	99.2%	5	0.8%
11	충북	490	489	99.8%	1	0.2%
12	충남	732	729	99.6%	3	0.4%
13	전북	759	757	99.7%	2	0.3%
14	경북	915	848	92.7%	67	7.3%
15	경남	997	993	99.6%	4	0.4%
16	제주	192	192	100.0%	-	-
계		12,213	12,070	98.8%	143	1.2%

자료 : 교육부